

인천지방법원 2022. 4. 20 선고 2019나63006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인천지방법원 2022. 4. 20 선고 2019나63006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6. 5 선고 2017가단246738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감천

담당변호사 서수완

피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지원

담당변호사 김성후

변론 종결 2022. 3. 16.

판결 선고 2022. 4. 20.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6. 5. 선고 2017가단246738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C이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7. 6.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7. 7. 7. 접수 제24512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 31. E에게 300,000,000원(이하 '제1대여금'이라 한다)을 이자 연 15%, 변제기 2016. 7. 3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C, K은 E의 제1대여금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6. 5. 31. E에게 100,000,000원(이하 '제2대여금'이라 한다)을 변제기 2016. 6. 3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C은 E의 제2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2016. 9. 6. E에게 100,000,000원(이하 '제3대여금'이라 하고, 위 대여금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대여금'이라 한다)을 변제기 2016. 10. 6.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C은 E의 제3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C은 2017. 7. 7. 배우자인 피고에게 그 소유인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7. 6.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위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위 증여계약을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하며,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마. 원고는 2017. 12. 15. E, C, K(이하 'E 등'이라 한다)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7가합3143호로 이 사건 각 대여금의 원리금을 전혀 변제받지 못하였다며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E 등은 위 소송에서 원고에게 합계 508,000,000원¹⁾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9. 1. 24. E 등의 변제항변을 모두 배척하고 'C은 E와 연대하여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 합계액 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 청구 인용판결을 선고하였다. E 등은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인천) 2019나10062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항소법원은 2021. 12. 24.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면서, 원고가 제1대여금채권 중 원리금 1억 원을 L에게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취지를 일부감축함에 따라 제1심판결 중 제1대여금채권과 관련된 주문을 'E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5,849,3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변경하였다. E 등이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아 항소심에서 변경된 주문을 포함한 위 1심판결은 2022. 1. 11.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21, 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보전채권의 발생 및 범위

가. 인정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성립하였고, 그 잔존원금이 455,849,314원(=제1대여금채권 255,849,314원 + 제2대여금채권 100,000,000원 + 제3대여금채권 100,000,000원)에 이르므로, 위 채권에 관한 원고의 C에 대한 연대보증채권 원금 합계 455,849,31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제1, 2 대여금채권에는 선이자 합계 1,6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금원은 대여 원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또, E, C은 2016. 4. 28.부터 2017. 7. 7.까지 원고에게 합계 4억 9,2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위 금원을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의 원리금 변제에 충당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 당시 C의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는 원금 7,346,175원만 남게 되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액수는 7,346,175원에 불과하다.

2) 판단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 당시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이 전혀 변제되지 않았음은 위 1.의 마.항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의 원리금이 대부분 변제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옳지 않다.

3. 사해행위의 성립

가. C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1) 아래 각 도표의 '인정근거' 항에 기재된 각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 무렵 원고의 적극재산이 합계 1,736,270,000원인 반면, 소극재산이 합계 2,173,489,622원에 달해 원고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부동산	130,000,000원	갑 제1호증, D의 감정결과
2	파주시 M, N, O, P 토지, Q 토지2)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3,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이 2017. 11. 28. 소외 주식회사 Y에 M, P토지에 관하여 각 2017. 4. 1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채무자의 적극재산인 부동산에 이미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위 가등기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담보가등기로서 강제집행을 통한 매각이 가능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적극자산을 산정할 때 제외하여야 하나(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스스로의 불이익으로 위 각 부동산에 설정된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임을 전제로 위 각 부동산을 적극재산이라고 주장하므로, 원고의 주장에 따라 위 각 부동산을 적극재산으로 본다.	1,606,270,000원	갑 제6호증, 을 제1, 5호증(가치번호 포함), D의 감정결과
적극재산 합계	1,736,270,000원		

1	주식회사 R에 대한 대출금	44,489,622원	주식회사 R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2	S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 (N 토지에 관한 담보신탁계약의 피담보채무)	1,040,000,000원	S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3	T조합에 대한 대출금 (○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24,000,000원	T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4	U조합에 대한 대출금 (Q 토지에 관한 담보신탁계약의 피담보채무)	465,000,000원	V단체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5	이 사건 각 대여금에 기한 연대보증채무	500,000,000원	갑 제2 내지 5호증, 제21, 25호증(가치번호 포함)
소극재산 합계	2,173,489,622원		

2) 피고는 위 W, X, N, O, Q 토지 지상 건물의 분양수익금이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1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분양수익금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옳지 않다.

3) 또, 피고는 이 사건 각 대여금에 관한 연대보증채무가 7,346,175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위 주장도 옳지 않다.

나. 사해행위 인정여부

위와 같이 C은 채무초과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는데, 이는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그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 역시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K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그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어 원고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5, 19호증, 을 제4, 7, 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K 명의의 인천 강화군 Z, AA, AB, AC, AD, AE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6억 5,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나, 위 각 부동산은 2018. 1. 30. 합계 1,371,796,000원으로 감정되었다가 1,401,313,721원에 매각되었고,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위 매각대금에서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한 사실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옳지 않다.

2)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만으로 피고에 대한 사해의사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선의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옳지 않다.

4.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그러므로 C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한다.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양민호

판사김혜인

판사전솔이

별지

- 1) 제1, 2심 판결서에는 피고들이 주장하는 변제액이 504,000,000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제2심판결 제6, 7쪽에 첨부된 도표의 합계액이 208,000,000원이 아닌 204,000,000원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오기로 보인다.
- 2)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3,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이 2017. 11. 28. 소외 주식회사 Y에 M, P토지에 관하여 각 2017. 4. 1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채무자의 적극재산인 부동산에 이미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위 가등기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담보가등기로서 강제집행을 통한 매각이 가능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적극재산을 산정할 때 제외하여야 하나(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스스로의 불이익으로 위 각 부동산에 설정된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임을 전제로 위 각 부동산을 적극재산이라고 주장하므로, 원고의 주장에 따라 위 각 부동산을 적극재산으로 본다.